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다나은 정부</b>
	배포일시	2018. 12. 12(수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	담 당 자	·과장 백봉기, 주무관 홍경보, 주무관 심상윤 ☎ (033) 769-5830, 5850, 5852	
보 도 일 시	2018년 12월 12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
## 원주국토청, 강원권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

### - 화물차 적재물 관련 법령강화 내용, 겨울철 안전운전 및 교통안전수칙 홍보 -

- 원주지방국토관리청(주현종 청장)은 교통량이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과속방지, 음주운전 근절, 과적금지 등의 교통안전 의식 확산을 위해 강원권 유관기관 합동으로 12월14일 14시 횡성휴게소(강릉방향)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.
- 합동 캠페인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, 강원도, 강원지방경찰청, 한국도로공사, 도로교통공단, 교통안전공단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한다.
- 특히, 이번 캠페인에서는 강원권 적재불량 화물자동차 근절을 위해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한 적재화물 고정방법과 적재불량 적발시 제재관련 법령강화 내용 및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 등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.
-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적발시 위반차량운행정지 기간 증가 등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\*되었고,
  - \* 당초 : 1차 위반차량운행정지15일, 2차 위반차량운행정지20일, 3차 위반차량운행정지30일
  - 개정 : 1차 위반차량운행정지30일, 2차 위반차량운행정지60일, 3차 위반차량운행정지90일

○ 폐쇄형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의 경우에는 적재불량 관련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적재불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폐쇄형 적재함 설치가 적극 권장된다.

□ 아울러, 겨울철을 맞아 운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과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여 강원권을 찾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원주광역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 심상윤 주무관(☎ 033-769-585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	--